

(유권해석) 묘목의 고손율은 2퍼센트 이내에서 적용해야 한다.

[국토부 2003-02-08 토관 58342-178]

질의요지

고손율을 규정보다 높게 반영하여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

회신내용

묘목의 이전에 다른 고손율은 「토지보상법 시행규칙」 제38조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.